

울산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165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1655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3가소398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양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길

변론 종결 2024. 4. 18.

판결 선고 2024. 5. 23.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3가소3981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6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B 도로 6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2. 1. 증여를 원인으로 1994. 12. 21.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383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4. 12. 31. 양산시 D 전 235m²로부터 분할되었고(분할후 남은 토지를 이하 'D 토지'라 한다), 같은 날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후 D 토지는 1994. 5. 31. 양산시 E 잡종지 877m²(이하 '합병전 E 토지'라 한다)에 합병되면서 말소되었다. 합병전 E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00. 3. 21. 주식회사 F에 합병후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1974. 12.경 G사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대피소 C지구 편입을 목적으로 인근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편입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토지 보상금 공탁'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을 제2호증 8면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74. 12.경 G사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대피소 C지구 편입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전 D 토지에서 분할하고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편입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 토지와 다시 합병하고 지목을 도로에서 전으로 변경하는 등 원상회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변경전 지목인 전과 동일한 지목인 양산시 H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m²당 104,8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의 부당이득금 153,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참조).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때부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3160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도로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도로 사이에는 줄과 차량 통제용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어 위 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여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분할과 매도 경위 및 그 위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00. 3. 21. 매도한 합병후 E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성규

판사설정은

판사유진현